

의안번호	2205366
의 퇴 인	윤건영 의원
회 답 일	2024. 11. 29.
추계번호	24F49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 LNG발전 세율 인하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LNG발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 495억원, 2029년 469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410억원(연평균 48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역자원시설세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LNG발전 세율인하 (안 제146조제2항제3호 단서신설)	-495	-489	-482	-475	-469	-2,410	-48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LNG발전 세율인하 (안 제146조제2항제3호 단서신설)	○ LNG발전의 세율인하 - 열병합발전: (현행) 0.6원/kWh → 0.2원/kWh - 그 밖의 화력발전: (현행) 0.6원/kWh → 0.3원/kWh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LNG발전 세율인하 (안 제146조제2항제3호 단서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LNG발전의 발전량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서 전망하고 있는 LNG 발전량만큼 발전한다고 가정
 -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2030년 LNG 발전량 전망에는 열병합과 그 외 기타발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 열병합과 그 외 기타 발전량 실적치 비율(열병합 24.24%, 기타 발전량 75.6%)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

[표 2] 2023년 발전방식별 LNG 발전량 및 비율

(단위: TWh, %)

구분	발전량	비율
열병합 발전량	38.2	24.4
열병합 제외 기타 발전량	118.5	75.6
합계	156.7	100.0

주: 발전량 테라와트시(TWh)는 와트시(WH)의 10^{12} 배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답변자료

-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발전량 전망은 5년 단위로 전망되어 2030년 (LNG 발전량 142.4TWh)과 2036년(LNG 발전량62.3TWh) 전망값만 존재하므로 위의 발전방식별 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
 - 열병합발전은 2023년 실적치(38.2TWh)에 위 전체 LNG 발전량의 동 발전량 비율(24.4%)을 적용하여 산정한 2030년 전망액(34.7TWh)까지 매년 균등(0.5TWh)하게 감소한다고 가정
 - 기타 화력발전은 2023년 실적치(118.5TWh)에 위 전체 LNG 발전량의 동 발전량 비율(75.6%)을 적용하여 산정한 2030년 전망액(107.7TWh)까지 매년 균등(1.5TWh)하게 감소한다고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 (제도개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시설분 화력발전에 대한 표준세율은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지역자원시설의 특정시설분 과세대상은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이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음

[표 3]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 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개정안은 화력발전 가운데 LNG발전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
 - 열병합발전은 현행 0.6원/kWh에서 0.2원/kWh으로 조정
 - 기타 화력발전은 현행 0.6원/kWh에서 0.3원/kWh으로 조정

나. 추계방법 및 결과

□ (추계방법) 향후 전망된 LNG 발전량에 세율 인하액을 반영하여 산정

- LNG 발전량 전망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2030년 전망액(142.4TWh)을 발전방식별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전망
 - 열병합발전량은 2023년 실적치(38.2TWh)에 발전량 비율(24.4%)을 적용하여 산정한 2030년 전망액(34.7TWh)까지 매년 균등(0.5TWh)하게 감소한다고 가정
 - 기타 발전량은 2023년 실적치(118.5TWh)에 발전량 비율(75.6%)을 적용하여 산정한 2030년 전망액(107.7TWh)까지 매년 균등(1.5TWh)하게 감소한다고 가정

[표 4] 향후 LNG 발전량 전망: 2024~2030년

(단위: TWh)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열병합 발전량	38.2	38.2	37.7	37.2	36.7	36.2	35.7	34.7
기타 발전량	118.5	117.0	115.4	113.9	112.3	110.8	109.2	107.7

주: 2023년 발전량은 실적이며, 2030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2023년 한국전력통계」, 2024.5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전망된 향후 5년간의 발전방식별 LNG 발전량에 현행과 개정안의 세율인하 차액(열병합 발전 0.4원/kWh, 기타 발전 0.3원/kWh)적용하여 산정
 - 열병합 LNG 발전 세율 인하에 따라 2025년 149억원, 2029년 141억원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2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기타 LNG 발전 세율 인하에 따라 2025년 346억원, 2029년 328억원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5] 지역자원시설세 LNG 발전 세율인하의 세수효과

(단위: TWh,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열병합 발전	발전량 (A)	37.7	37.2	36.7	36.2	35.7	183.5
	세수 감소분 (B=A×0.4원/kWh)	149	147	145	143	141	725
기타 발전	발전량 (A)	115.4	113.9	112.3	110.8	109.2	561.6
	세수 감소분 (B=A×0.3원/kWh)	346	342	337	332	328	1,685

주: 발전량 테라와트시(TWh)는 와트시(WH)의 10^{12} 배수, 키로와트시(kWh)는 와트시(WH)의 10^3 배수

- (추계결과) 지역자원시설세의 LNG 발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 495억원, 2029년 469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410억원(연평균 48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감소액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열병합 발전 세수 감소액	149	147	145	143	141	725	145
기타 발전 세수 감소액	346	342	337	332	328	1,685	337
합계	495	489	482	475	469	2,410	48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